

녹 색 구 매 방 침

삼호개발주식회사

제정일 2022.07.22.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삼호개발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)가 녹색생산자이자 녹색소비자로서 친환경사업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용어의 정의]

- ① “친환경상품”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1.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제품
 2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우수재활용 (GR)제품
 3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의한 에너지 효율표시 1-2등급 제품,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
 4.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저탄소인증제품
 5.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하는 HB(Healthy Building) 마크 제품
 6. 납, 수은, 카드뮴, 크롬, 석면, PCB 등 유해물질 저감 제품
 7. 포장단위 경량화, 리필 및 용기회수 등 폐기물 저감 제품
 8. 해외 환경마크 인증제품
 9. 상기에서 정한 인증제품 외 정부에서 친환경상품 관련 신규인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제품.
 10. 그밖에 친환경성이 있다고 구매부서 부서장이 인정한 물품 (재사용·재활용·재이용이 용이한 제품,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품, 내구성이 큰 제품, 제품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서 자원소모를 줄인 제품, 생분해되는 제품, 친환경공법에 사용되는 제품 등)
- ② “녹색구매”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함을 말한다.

제3조 [적용범위]

-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회사의 본사, 국내지사, 공장, 건설현장 등이다.
- ② 구매대상 품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1. 토목, 건축, 전기, 화학, 설비, MRO(사무용품 및 소모품), 생활용품 등 친환경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
 2. 사업장에서 제조활동에 소요되는 원·부자재
 3. 회사가 사용하는 건설기계 등

제4조 [이행절차]

- ① 녹색구매의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.
 1. 구매부서는 상기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수요 및 구매요청이 있을 시 친환경상품 여부 및 친환경상품으로의 대체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2. 구매부서는 친환경상품의 가격, 품질, 납품기한을 고려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되 가능한 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3. 구매부서는 녹색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대내외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1항 에서 제시한 녹색구매의 이행절차에 대한 예외를 둔다.
 1. 구매부서 담당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사업활동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
 2. 일백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
 3. 특허, 신기술 등 설계상 제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